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의안번호 : 제581호
- 제출일자 : 2019년 3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2. 제 안 이 유

-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인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에서 ‘장애’가 ‘직무수행’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에서 ‘심신장애’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변경함(안 제18조제2항제2호)
- 나.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문구를 정비함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‘심신장애’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‘장애’가 ‘직무수행’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, 조항을 개정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차별금지)에 의하면 “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”라고 명시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2016년 2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한 바 있음.

2)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

-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.
- 동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, ‘심신장애’라는 문구는 ‘장애’가 ‘직무수행’을 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음.
-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‘장애’라는 단어 대신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.

3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

-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,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바꾸고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하고 있음.
- ‘호선하다’의 뜻은 “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”로 정의하고 있는데, 안 제17조 내용 중 ‘호선하여 선출하다’는 표현은 의미가 중복되고 있으므로 ‘호선한다’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함.
- 본 개정안은 조례 문장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추고,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문체로 사용하도록 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음.